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방의 날’ 을 ‘소방관의 날’ 로 명칭 변경〉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음.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명칭 변경

개정안은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고, 소방관의 날 기념행사의 목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의 노고를 기리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u>안전의식</u> 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u>높이고</u>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u>소방의 날</u> 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u>소방의 날</u>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u>소방관의 날</u> 제정과 운영 등) ① ----- <u>생명</u> 과 <u>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의 노고를 기리고</u> <u>안전의식</u> 과----- ----- <u>높이며</u> ----- -- <u>소방관의</u> -----. ② <u>소방관의</u>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제7조제1항).

<소방의날 행사 개요>

- ☐ 목적: 매년 11월 9일 소방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제정된 “소방의날” 기념행사로 전국 소방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며 정부 주요 인사, 국회, 전국 소방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관련 단체,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참여

☐ 연혁: 1963년 ~ 계속

☐ 2023년 이후 행사 예산액

(단위: 백만원)

소방의날 기념행사	2023	2024	2025	2026
예산액	228	228	250	270

☐ 최근 3년간 행사 상세 내역¹⁾

구분 연도	일 시	장 소	행사주제	비고 (프로그램 등)
2025 (63주년)	11. 6.(목) 09:30~11:00	세종문화예술회관 (실내)	생명과 안전, 행복을 여는 119	• 축하공연(합창, 가수) • 에세이 낭독 • 주제영상 시청
2024 (62주년)	11. 8.(금) 14:30~15:00	정부세종종합 청사 체육관 (실내)	국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 119	• 악대 축하공연 • 합창 합동공연 • 사진 전시회 • 안전체험존 운영
2023 (61주년)	11. 9.(목) 10:30~11:15	용산어린이정원 잔디광장 (실외)	국민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119가 함께하겠습니다.	• 악대 축하공연 • 대합창 • 안전체험부스

(자료: 소방청)

1) 2025년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인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고, 기념행사의 목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의 노고를 기리”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념일 명칭	소방의 날(매년 11월 9일)	소방관의 날(매년 11월 9일)
기념일 목적	<u><신 설></u>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의 노고를 기림
	-국민 안전의식과 화재 경각심 제고	(좌 동)
	-안전문화 정착	(좌 동)

문언상, ‘소방의 날’이 대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업무 전반에 초점을 둔 명칭인 데 비해, ‘소방관의 날’은 소방공무원 등 직업군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소방공무원 등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보다 분명히 부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업적을 강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소방의 날’ 행사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구현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방의 날 기념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노고와 희생을 기리는 한편,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소방의 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축사, 소방대원에 대한 감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헌정글 낭독, 소방 업무 관련 유공자 포상, 순직 소방대원의 유가족 격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방업무 종사자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통해 소방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둘째, ‘소방’과 ‘소방관’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개념적 범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 업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및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소방대원’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한국소방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 임직원 등 민간 인력도 포함됨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2)).

2)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른 소방 업무의 종류>

구 분	업무	업무 종사자
화재분야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인명구조 분야	구조·구급(119구조·구급 체계 포함)	소방대원(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119항공대원 ³⁾)
안전문화 지원 분야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공무원(소방공무원, 그 밖의 공무원), 민간인(의용소방대원, 한국소방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등)

(자료: 소방청)

이에 비해 ‘소방관’이라는 명칭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주로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포괄하는 ‘소방’이라는 개념과 화재·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칭하는 ‘소방대원’이라는 용어에 비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소방관’ 용어는 그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 8. (생략)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말한다.

개념적 범위와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따른 소방의 날 기념행사 목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의 노고를 기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는 것은 소방업무가 화재 진압에 한정되지 않고 화재의 예방·경계, 구조·구급,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그 종사자 역시 소방공무원 외에 다양한 공무원 및 민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일 명칭 변경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체계상 ‘소방대’가 소방공무원 외에 의용소방대원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기념 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자료: 소방청)

□ 추진방향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공감으로 변화하는 소방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고,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미래비전 제시
- 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기념식 개요

- (일 시) '25. 11. 6.(목) 09:30~10:00, 10:00~11:00
식전행사 본 행사
- (장 소)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
- (참석인원) 약 760명
 - 주요내빈 ^{100명} : 행안부장관, 국회의원, 순직 유가족, 산하단체장 등
 - 그 외 ^{660명} : 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가족, 교육생, 관련학과 교수 등
- (슬 로 건)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의 삶을 지켜주는,
소방의 따뜻하고 변함없는 신뢰의 약속을 상징

- ▶ **생명존중** : 재난현장에서 그 어떤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는 소방의 근본 철학
- ▶ **국민안전** :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의 존재 이유이자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
- ▶ **최우선** : '생명존중', '국민안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겠다는 소방의 책무와 실천 의지



□ 식 순

구분	식순		소요 시간		세부 내용
식전 행사 (30')	행사장	행사 안내	09:30 ~ 09:33	3'	◦ (사회) 김연진 아나운서
		식전 영상	09:33 ~ 09:39	6'	◦ (영상) 비상 시 대피영상(2:30) 소방길터주기 홍보영상(3:50)
		여는 공연	09:39 ~ 09:57	18'	◦ (단체) 퓨전국악그룹 쿤 - 비상(2:43), 나팔바지(3:22), 홀로아리랑(3:40) ◦ (개인) 소방사 김민욱 - 이제 나만 믿어요(4:04)
		장내 정리	09:57 ~ 10:00	3'	◦ 무대정리 및 좌석 정돈
	대기실	방문 인사	09:45 ~ 09:55	10'	◦ 청장 직무대행, 주요내빈
	입구 ~ 지정석	영접 및 입장, 착석	09:55 ~ 10:00	5'	◦ (주빈영접) 청장 직무대행 ◦ (동반입장) 장관, 청장 직무대행, 연합회장 등
본 행사 (60')	▶ 개 식		10:00 ~ 10:02	2'	◦ (진행) 사회자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 념		10:02 ~ 10:06	4'	◦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 - 소방관 남·여 대표 2명(0:40) ◦ (애국가 1절) - 혼성 7명소방 6, 성악가 1(1:20) ◦ (묵념) 현장영상 송출(1:05)
	▶ 영상축사		10:06 ~ 10:09	3'	◦ 대통령
	▶ 인사말씀		10:09 ~ 10:12	3'	◦ 청장 직무대행
	▶ 주제영상		10:12 ~ 10:16	4'	◦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활동, 미래비전, 재도약 의지 등
	▶ 유공자 포상		10:16 ~ 10:23	7'	◦ (개인) 4명(훈장, 포장, 대통령·장관 표창) ◦ (단체) 1개 기관(대통령 표창)
	▶ 기념사		10:23 ~ 10:27	4'	◦ 행정안전부장관
	▶ 헌정글 낭독		10:27 ~ 10:30	3'	◦ (낭독) 배우 김지은 - 소설가 김훈 “라면을 끓이며” 에세이집 中 일부 발췌
	▶ 축하공연 - 단체 - 특별		10:30 ~ 10:55	25'	◦ (단체)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소방공무원 혼성 8명 - 브릴란떼 흰수염고래·쇼 각 1절(총 4:00) - 브릴란떼+소방 슈퍼스타(3:30) - 합창 후 국민안전을 다짐하는 경례 ◦ (특별) 가수 박정현 - 꿈에(5:50), 이젠그랬으면 좋겠네(4:25)
	▶ 기념촬영 및 폐식		10:55 ~ 11:00	5'	◦ (기념촬영) 슬로건피켓 활용 단체촬영 ◦ (환송) 장관, 청장 직무대행